

 국토교통부		<h1 style="margin: 0;">보도자료</h1>	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	
		배포일시	2020. 1. 21.(화) 총 3매(본문 3)		
담당 부서	도시교통과	담당 자	• 과장 박건수, 사무관 강준식, 주무관 설수연 • ☎ (044) 201-3814, 3811		
보도 일시		2020년 1월 22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21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	

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한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개정 추진

-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 및 안내표지 등 안전설비 의무적으로 설치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장 설치·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, 지자체가 3년마다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한다.
 - 주차장 안전기준 강화는 '19.12.24일 국회에서 개정·공포(시행일 '20.6.25.)된 「주차장법」(일명 하준이법)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이며, 이번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개정안은 3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.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① 주차장 안전관리실태 조사 방법·주기 등(안 제1조의3)
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·설비 및 안전기준 준수,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여부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.

②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 등 의무화(안 제4조·제6조·제11조)

- 경사진 곳에 주차장(노상·노외·부설주차장)을 설치하는 경우, 주차장 설치·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치*하도록 하고,

* 경사진 주차장의 내리막 방향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임목, 고임돌, 고무, 플라스틱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

- 경사진 주차장 표시, 주차방법, 고임목 고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였다.

*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작성하는 ‘주차장 설치계획서’에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 안전대책 내용 포함

③ 백화점·놀이시설 등 대형주차장의 보행안전 시설 설치(안 제6조)

-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대형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,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.

④ 지자체장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시설 등에 관한 지도점검 강화(안 제4조·제6조·제11조)
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, 대형 주차장의 보행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한 번 이상 지도·점검하도록 하였다.

* 현재는 주차장에 방범설비 설치 여부에 대하여만 지도·점검 실시

⑤ 기존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안전설비 설치(안 부칙 제2조)

- 경사진 주차장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의 경사진 주차

장의 경우에도 시행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맞게 미끄럼 방지시설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다.

-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의 정책자료/법령정보/입법예고·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3월 2일까지 우편,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* 의견제출처: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
(전화: 044-201-3814, 3811, 팩스 044-201-5581)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강준식 사무관(☎ 044-201-381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